기 술 지 원 협 약 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 한컴이노스트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웹리포팅 툴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5,455,749원, vat미포함, 유지보수 기간(2027.01.01.~2027.12.31.)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09일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한컴이노스트림 (인)

이언지 / 20261109143954771 /

기 술 지 원 협 약 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 한컴이노스트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웹리포팅 툴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5,455,749원, vat미포함, 유지보수 기간(2027.01.01.~2027.12.31.)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09일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한컴이노스트림 (인)

이언지 / 20261109143955225 /

기 술 지 원 협 약 서

○ 사 업 명 : 2027년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이트리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웹한글기안기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5,000,000원, vat미포함,유지보수 기간(2027.01.01.~2027.12.31.)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일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이트리원 (인)

이연지 / 20261109143930690 /

기 술 지 원 협 약 서

ㅇ 사 업 명 : 2027년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이트리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웹한글기안기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5,000,000원, vat미포함,유지보수 기간(2027.01.01.~2027.12.31.)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일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이트리원 (인)